

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·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3082 |
|------|------|

2025.09.08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08월 11일,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5년 08월 14일
3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5.09.08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실장 주용태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고,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「서울창업허브 창동」을 개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

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
-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, ‘적정’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: 도봉구 마들로13길 84, 창동 아우르네
- 규모: 지하2~지상4층 / 연면적 8,978.17㎡
- 공간현황: 입주공간, 오픈이노베이션센터, 뉴미디어 스튜디오 등

### 나. 위탁개요

- 사업명: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·운영
- 위탁기간: 2년(2026. 1. 1.~ 2027. 12. 31.)
  - ※ 위탁기간이 '25.10.31'자로 종료되나, 사업추진 연속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(서울경제진흥원)과 2개월('25.11.1~'25.12.31) 위탁기간 연장 예정
- 위탁유형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- '26년 소요예산(안): 3,225백만원(민간위탁금 등)

### 다. 위탁사무

-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선발·관리·보육·지원 등 사업추진 전반
-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(VC·AC 등), 대중견기업 연계 및 사업지원

-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운영 및 뉴미디어 마케팅 활용한 창업기업  
보육지원
- 창동 아우르네 전체 복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총괄
- 기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을 위해 ‘시’와 협의한 사항

#### 라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## 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##### 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  
개척을 원스톱으로 지원 등 동북권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
- 뉴미디어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 
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·제공할 수 있는 투자·창업기획  
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
- 국내외 플랫폼 및 다양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등  
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 
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
- 따라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·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  
되는 위탁 사무로,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 
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

##### ○ 추진경위

- ' 15. 2. 창동·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발표
- ' 16. 5.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수립
- ' 17. 9. ‘창동·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’ 통합 관리·운영 추진  
계획 수립

- ' 19. 9.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(제289회 정례회)
- ' 20. 4. '(가칭)창업고도화센터 관리·운영' 위·수탁협약 체결
- ' 21. 5.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
- ' 22. 6. 서울창업허브 창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(제307회 정례회)
- ' 22. 10. '서울창업허브 창동' 관리·운영 위·수탁협약 체결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 25. 5. 9.) 심의 결과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제11조(협약체결 등)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 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# 1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(2025.12.31.) 예정인 ‘서울창업허브 창동’의 민간위탁 재위탁(2026.1.1.~2027.12.31.)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<sup>1)</sup>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#### 2.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밸리 활성화를 주도하고자 기존의 ‘동북권 창업센터’를 개선하여 ‘서울창업허브 창동’을 개관함(2021.5.).
-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전신인 ‘동북권 창업센터’ 당시 서울경제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)과 최초 3년간(2019.9.~2022.6.)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 후에는 민간위탁 재계약<sup>2)</sup>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.
- 현재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창동 아우르네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, 지하 2층, 지상 4층 규모의 공간을 입주기업 공간, 오픈이노베이션센터,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등으로 조성·운영되고 있음.

1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)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점수(70점)보다 높은 총점 81점으로 적정 판정(매출 및 투자유치에서 우수 평가)

- 동 기관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발굴·입주 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, 단기 투자 멘토링 지원, 뉴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
### < 서울창업허브 창동 시설 현황 >
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관부서 : 서울시 창업정책과 창업기반팀</li> <li>○ 수탁기관 :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</li> <li>○ 위탁기간 : 2022.11.1.~2025.10.31.</li> <li>○ 위 치 : 도봉구 마들로13길 84, 창동 아우르네</li> <li>○ 규 모 : 지하2~지상4층 / 연면적 8,978.17㎡</li> <li>○ 주요기능 : •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발굴 및 입주 지원<br/>•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•단기 투자 멘토링 지원 •뉴미디어 스튜디오 운영</li> <li>○ 인력규모 : 정규직 5명</li> <li>○ 예산규모 : 3,174백만원</li> <li>○ 공간현황 : 입주공간, 오픈이노베이션센터,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등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~4층  | 운영사무실, 입주기업 사무실(30실), 협업공간, 휴게공간 등  |
| 1층  | 비즈니스 라운지, 협업공간, 네트워킹 공간, IR 룸 등     |
| 지하1층  | XR스튜디오, 온라인콘텐츠 제작·송출, 인플루언서 대기 공간 등 |
| 지하1층~1층   | 대강당, 계단형 강의장, 라운지, 휴게실, 야외공간 등      |
| 지하2층  | 입주기업·방문객 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동 기관은 최근 3년간 창업기업 753개사를 지원하고, 투자유치 410억 2천 4백만원, 기업매출 997억 8천 5백만원, 신규고용 798명 등의 운영성과를 보고함.

### < 창업허브 창동 운영 성과(2022~2024년) >

| 구분          | 합계     | 2022년  | 2023년  | 2024년 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사업 참여기업 수   | 753    | 275    | 230    | 248    |
| 매출액(백만원)    | 99,785 | 19,628 | 34,761 | 45,396 |
| 투자유치(백만원)   | 41,024 | 26,384 | 12,066 | 2,574  |
| 신규고용(명)     | 798    | 247    | 262    | 289    |
| 판로개척 지원(개사) | 506    | 156    | 200    | 150    |
| 스튜디오 이용자(명) | 51,040 | 14,795 | 14,685 | 21,560 |
| 지식재산권(건)    | 340    | 116    | 68     | 156    |
| 공실(개/30실)   | 11     | 2      | 5      | 4      |
| 공실 해소 평균기간  | 4개월    | 4개월    | 4개월    | 4개월    |

- 그리고 동 기관은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공통사무 20.1점, 개별사무 49.14점, 사용자만족도 17.88점을 받았고, 별도 감점은 없어 종합점수 87.12점을 받았음.

### 3.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

-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」 제18조<sup>3)</sup>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.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서울창업허브 창동의 민간위탁 재위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.
- 그리고 동 시설은 동북권 창업거점으로서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·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민간위탁<sup>4)</sup> 요건에도 부합함.
- 다만, ‘서울창업허브 창동’의 투자유치 실적은 2021년 283억 8천만원에서 2024년 25억 7천 4백만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는데, 이에 대해 서울시는

3)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 
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 
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4)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’ 민간위탁 요건  
 ① 시 소관사무 ② 공공성·공익성 ③ 능률성·전문성 / 지속성·포괄성 ④ 경쟁가능성 ⑤ 책임성

글로벌 투자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반적인 국내기업 투자가 위축되었고, 투자유치 보다 입주기업들의 매출 증대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결과(입주기업 매출액 '21년 124억 1백만원 → '24년 453억 9천 6백만원)라는 입장임.

- 그러나 2024년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(FDI)은 2023년에 145억 5천 4백만 달러, 2024년은 129억 4천 2백만 달러로 각각 역대 최대 투자유치액 2위, 3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내는 등 투자유치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.

### < 최근 5년간('21~'25) FDI 현황 >

단위: 억불

| 연도      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서울시 FDI  | 179.6 | 107.3 | 145.5 | 129.4 | 38.4  |
| 대한민국 FDI | 295.0 | 304.4 | 327.1 | 345.7 | 131.0 |

※서울시 FDI 순위 : '21년 179.6억불(1위), '23년 145.5억불(2위), '24년 129.4억불(3위)  
 ※대한민국 FDI 순위 : '24년 345.7억불(1위), '23년 327.1억불(2위), '22년 304.4억불(3위)

-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창동에 대한 투자유치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투자유치 지원 역량 보완과 단기 투자 멘토링 지원사업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.
- 이에 더해 동 민간위탁 결과보고서상 투자유치의 감소와 그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만큼 투자유치 증감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지표에 투자유치 성공률, 후속 투자 유치율 등 보다 세분화된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

(재석의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·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08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고,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「서울창업허브 창동」을 개관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, '적정'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: 도봉구 마들로13길 84, 창동 아우르네
- 규모: 지하2~지상4층 / 연면적 8,978.17㎡
- 공간현황: 입주공간, 오픈이노베이션센터, 뉴미디어 스튜디오 등

## 나. 위탁 개요

○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·운영

○ 위탁기간 : 2년(2026. 1. 1.~ 2027. 12. 31.)

※ 위탁기간이 '25.10.31'자로 종료되나, 사업추진 연속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(서울경제진흥원)과 2개월('25.11.1~'25.12.31) 위탁기간 연장 예정

○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'26년 소요예산(안) : 3,225백만원(민간위탁금 등)

## 다. 위탁사무

-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선발·관리·보육·지원 등 사업추진 전반
-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(VC·AC 등), 대중견기업 연계 및 사업지원
-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운영 및 뉴미디어 마케팅 활용한 창업기업 보육지원
- 창동 아우르네 전체 복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총괄
- 기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을 위해 '시'와 협의한 사항

## 라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### 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원스톱으로 지원 등 동북권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

- 뉴미디어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·제공할 수 있는 투자·창업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
- 국내외 플랫폼 및 다양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등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
- 따라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·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위탁 사무로,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

○ 추진경위

- '15. 2. 창동·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발표
- '16. 5.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수립
- '17. 9. '창동·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' 통합 관리·운영 추진계획 수립
- '19. 9.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(제289회 정례회)
- '20. 4. '(가칭)창업고도화센터 관리·운영' 위·수탁협약 체결
- '21. 5.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
- '22. 6. 서울창업허브 창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(제307회 정례회)
- '22. 10. '서울창업허브 창동' 관리·운영 위·수탁협약 체결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5. 5. 9.) 심의 결과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**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**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**제11조(협약체결 등) ④**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**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**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실 창업정책과 박선아(☎ 2133-4884)

김남지(☎ 2133-4880)